

한국 디자인윤리 가이드라인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한국디자인기업협회
부산·대구·경북·광주 RDC

제정 2011.11.15.

이 지침은 우리 삶을 날로 윤택케 하는 디자인이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실천해야 할 윤리강령이다. 따라서 여타의 기본적인 윤리를 배경으로 하는 본 내용은 디자인 프로세스 전(全)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단,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및 최종 판단은 각 기관 내지 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

□ 디자인윤리의 준수

- 우리는 모든 고객의 가치와 그들의 개별적 차이를 존중한다. 그렇지만 고객의 소리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부정적 내지는 기계화된 방법으로 정형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화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그들과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고 권장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에 힘쓴다.
- 우리는 고객의 개인적 의견이나 그룹화된 의사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시장(市場)에서의 아이디어와 동향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 우리는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되는 디자인 또는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는다.
- 우리는 디자인윤리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인종, 종교, 연령, 신체적 장애 등을 차별화하는 고객의 의뢰 또는 고용주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해당과제 수행을 거절한다.

□ 문화적 정체성을 풍요롭게 함

우리는 디자인 결과로 얻어진 창작물과 환경 및 서비스가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소속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정의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적인 디자인원칙과 표준 이내에서 국가의 문화적 전통을 구체화하고 촉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지구생태계 보호

현세대와 차세대에 있어서의 유익이란 궁극적으로 지구생태계가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에 대한 아래의 책무를 준수한다.

-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옹호**
우리는 제품, 포장, 환경 등의 개발에 있어서 고객과 함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모두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 **지구상 생물권(生物圈)의 보호**
우리는 사람의 생명 내지 지구를 위협하는 오염물질의 방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우리는 동식물의 서식지 뿐 아니라 녹지 및 황무지 등을 포함한 천연자원을 지속가능 내지 재생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소재개발에 힘쓴다. 나아가 관련정보를 동시대의 사람들과 공유한다.
-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증가**
우리는 디자인 결과물의 내구성, 활용도 및 재활용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에너지의 현명한 사용**
우리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고, 제품 생산 및 사용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감방안을 고려한다.

[디자인 비즈니스 윤리]

□ 기본원칙

- 우리는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사업상 거래에 있어서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한다.
- 우리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다른 디자이너와 경쟁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그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다.
- 우리는 타인의 디자인 결과물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그에 대한 일반적인 평판 등을 훼손하지 않는다.
- 우리는 해외사업을 할 경우 국가의 디자인 윤리뿐 아니라 해당국가의 비즈니스 원칙도 존중한다.

□ 타인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기본권 보호

- 우리는 타인과 공동으로 작업한 디자인 결과물(이하 “공동결과물”이라 한다)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지 않는다.
- 공동결과물에서 참여디자이너 각자의 고유영역이나 공동작업 부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은 해당자 본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타인의 영역을 해당자 본인의 저작권법상 양도 없이 임의로 자신의 포트폴리오 내지 전시·홍보물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고객이나 고용주로부터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요청 내지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
- 우리는 여타 디자이너가 개입하여 미완료 상태이거나 수행 중인 프로젝트를 대체수용하거나 그 결과물이 명백한 타인의 지식재산일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 디자인 대가

- 우리는 소정의 급여, 협약에 의한 보수 내지 로열티 등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뿐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일체의 금전적 또는 물질적인 보상 등을 거부한다.
- 우리는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관련 디자이너 또는 컨설턴트 추천을 의뢰받았을 경우 해당 거래처 및 개인으로부터 그로 인한 대가 등을 받지 않는다.

[고객의 가치 추구]

고객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 책임은 고객의 비즈니스 목적이 윤리적이라는 전제 하에 그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창적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 고객의 목적 인식

우리는 디자인윤리를 기본으로 아래의 측면에서 고객의 장단기 이익을 증대키 위해 노력한다.

- 최선의 직무수행
- 사업관행의 성실한 준수
- 목적에 대한 전략적이고 경제적이며 기술적인 고려
-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디자인 방법으로 합목적적이고 고품질의 디자인 제공

□ 사용자의 이익 추구

우리는 일반대중의 사회적·개인적·물질적 복지, 특히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여함을 인식하고 이들에 역행하거나 위해한 행동은 의식적으로 거부한다. 특히 고령자나 신체적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하는 모든 잠재고객을 사려 깊게 인식하고,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 및 사용 등 가치사슬의 전(全)과정에 대해 숙고한다.

□ 고객의 정보보호

우리는 고객의 아이디어 및 기술, 전략,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 고객 자신에 의해 “공개 가능함”으로 명백히 진술 내지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공익에 관련된 사항이 아닐 경우 그에 관한 정보 내지 내역을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디자인 창작 및 연구윤리]

□ 표절 등의 금지

- 이 지침에서 “표절”이라 함은 의도적이던 비의도적이던, 게재(이하 ‘출판’ 및 ‘출품’을 포함한다)되었던 되지 않았던 일반적 지식이 아닌 자타(自他)의 아이디어 내지 논리, 고유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의 저작물 또는 디자인 창작물을 창작자나 저작권자(이하 ‘연구자’라 한다) 및 학술지 편집자 등의 허락이나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

- 자신의 저작권이나 지식재산은 디자인 창작자 또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결과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 또는 디자인 창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자기표절’이나 ‘이중게재’ 내지 ‘중복게재’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 또한 타인 내지 기관(이하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단체’ 등을 포함한다)의 보고서 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조직이나 기관이 가진 자료를 유·무상(有無償)으로 취득하여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 표절 등의 판정

-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등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심사 제도를 마련한다.
-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연구자의 표절 행위 등을 의심할 만한 이유 및 의혹이 제기된 경우 판정 절차를 즉시 개시한다.
-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사안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최소 6개월 이내에는 자체적으로 판정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표절 관련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등의 판정결과가 연구자의 인사 및 연구업적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에서 표절 등의 판정결과 활용을 위하여 소급적용할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합의 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